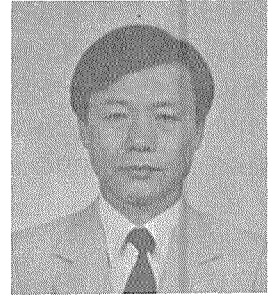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I)

—개정, 부정경쟁 방지법 초안 중심으로—



특 허 청 조사과장 황 의 창

— 목 차 —

1. 머리말
2. 영업비밀의 정의
3.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4. 외국의 입법에와 우리의 입법추진
5. 어떤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나?
6.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가?
7.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8. 맺는 말

1. 머리말

근대 세계경제사를 보면 '60년대에 미국이 세계경제를 제패했고 '80년대에 일본의 경제공격이 세계를 휩쓸었다. '90년대는 유럽이 도전하는 시대에 들어 섰다.

이러한 가운데 선진국들은 세계경제를 석권하기 위하여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한 무역장벽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기술개발규제 움직임을 구체화(기술개발규제법) 하면서 신기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부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 항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다. (현행과 같음)

2.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2장 부정경쟁 행위 등의 방지

제3조~제8조 (현행과 같음)

얼마전 미국 휴스턴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느 대기업의 임원집에 2명의 남자가 차를 몰고 와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자루를 집어 신고 쓸쓸같이 사라 졌다. 동네의 경비원은 하도 이상해 자동차 번호를 적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FBI(미연방 수사국)는 추적 끝에 쓰레기 자루를 신고 간 문제의 차량이 휴스턴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 차량이었음을 밝혀 냈다. FBI는 프랑스 정보기관이 미국 기업의 기술정보와 판매전략을 알아내기 위해 기업간부집의 쓰레기통까지 뒤진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지구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90년대의 경제전쟁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조그만 사건이다.

「유럽의 震動(Euroquake)」이란 화제작을 쓴 대니얼 번스타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끼리의 전투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군대가 되고 있다. 기업간부들은 어느 면에서 대통령이나 수상들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다.

스파이전도 소련의 탱크디자인보다 경쟁기업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새로운 전쟁에서 기업종사자들의 교육 수준과 숙련도, 기업 사명에 대한 충성심은 과거 군사전쟁에서 군인들에게 훈련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중요해지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와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은 중화기로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 그리고 판매의 노우하우로 무장한 기업들이다.

일본의 미쓰비시 그룹같은 재벌은 자그마치 200억달러를 들여 전세계에 뻗어 있는 계열기업-소비자-공급자를 연결하는 국제정보 네트워크(MIND)를 만들어 세계시장을 첨단컴퓨터체제로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 갔다.

냉정시대는 누가 먼저 첨단군사기술을 손아귀에 넣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져 누가 최고의 상품기술을 장악하고 누가 가장 효율적인 판매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경제전쟁의 승자가 된다.

첨단군사기술은 있어도 상업기술과 돈이 없는 소련이「맥뭇추는 거인」이 된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제파워게임의 성격을 잘 말해 준다.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이 경제전쟁의 전투병력인 기업체와 연대하여 기업을 위해 뛰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선진국의 정보기관들은 냉전 '종식후 군사비 감축에서 남게된 '평화의 배당금'을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제고에 쓰기 시작함으로써 스파이전은 이제 군사외교전선에서 경제전선으로 옮겨 붙고 있는 양상이다. 이들은 기업들을 위해

제 9 조 (다른법률과의 관계)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상법 중 상호에 관한 규정 또는 형법 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 내지 제4조,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제10조(현행과 같음)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1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

한 금지청구권 등) ①영업비밀의 보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1. 절도, 사기, 협박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쓰레기통만 뒤지는 것이 아니다.

출장 온 외국기업직원들의 회사기밀문서가 든 가방을 노리기도 하고 현지지점과 본사간의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통화를 도청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카터필러같은 회사는 모든 해외와의 교신을 암호로 하고 있고 듀폰은 전직 FBI의 방첩책임자를 고용했다고 했다.

지금 선진국들은 기술 등 노우하우를 축으로 한 세계경제시장 장악을 위하여 분주히 뛰고 있다.

미국의 세계적인 컴퓨터회사인 IBM과 독일의 최대 회사인 지멘스는 컴퓨터칩의 미·독동맹을 맺었고, 일본의 거대한 재벌인 미쓰비시 그룹도 독일의 다이물러벤츠 그룹과 제휴, 일·독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시장 분할점거를 노려 전략적인 연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산업경쟁사회에서 경쟁국가, 경쟁기업체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 등 사업활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영업상의 비밀 정보를 누가 먼저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정보 개발이나 관리,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인 것 같다.

이는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손쉽게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영업비밀 정보가 일과성이나 또는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관리기법 등의 개발 필요성이 그리 절실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기술혁신과 경제사회의 정보화, 서비스화 추세에 따라 영업비밀은 양산되어 가고 있고 그 유통량도 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고용인구의 빈번한 이동, 산업스파이 사건의 증가 등으로 비밀정보누출에 대한 위험의식과 함께 그 보호의 열망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등 영업비밀의 위상이 크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2. 영업비밀의 정의

영업 비밀이란 사업활동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 축적한 비밀정보로서 생산방법 등의 기술상의 비밀 뿐만 아니라 판매전략 등의 상업상의 비밀도 포함하여 기업비밀, 재산적 정보, 산업비밀 또는 노하우라고도 한다. 그러나 종래의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기술상의 비밀정보만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다.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행위

2.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3.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

는 행위

4.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영업비밀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소위 산업스파이가 노리는 기술상, 상업상의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로 보아도 좋을 것인바, 기술정보에는 설계 방법, 설계도면, 공정도, 실험데이터, 성분원료의 배합비,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햄버거의 조리방법, 코카콜라의 향 내는 방법 등이 있으며 상업정보에는 고객의 리스트, 거래선의 루트, 신제품의 생산계획이나 판매계획, 판매매뉴얼, 제품의 할인 시스템 등이 있고 기타 경영정보로서는 인사·조직·사무관리기법, 재무·금융 등 재산관리 방법 및 자료 등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개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성 즉 재산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고(비밀성) 그 영업비밀이 사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이용성) 일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업비밀은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법률적 특성을 살펴 보면 첫째,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그 개발정보의 비밀성 유지가 요체인데 반하여 특허제도는 그 발명, 고안의 공개가 요체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침해행위를 전제로 하여 이를 규제함으로써 비로서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나 특허제도는 공개를 댓가로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비밀정보가 공개되지 않는한 즉, 그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 영구히 독점행사할 수 있는데 반하여 특허제도는 일정기간 즉, 존속기간내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특허권, 저작권 등 현행 지적재산권제도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것 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특허제도는 특허청구의 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인정되어 보호 받을 수 있다.

넷째,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영업비밀 보유자에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고 공시제도가 없어 제3의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특허권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반면 영업비밀은 그 비밀성을 특정시한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비밀성이 존속되는한 계속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도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될 수 있어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특허제도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3.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최근 기술혁신과 경제사회의 정보화 추진에 따라 기술상 또는 상업상의 노하우 등 영업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하는 행위

②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3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조치를 법원

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 거래 또한 활발해지면서 타인의 영업비밀을 도용(산업스파이 사건 등)하는 등의 부정행위의 위험도 증대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이와 같은 영업비밀의 지적 재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하려는 움직임이 GATT/UR 등의 국제교섭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법체제에서는 이와 같은 무형의 지적재산인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가 국제적으로 보아도 반드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제도의 마련이 불가피하여 현행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보호 규정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영업비밀의 개발, 축적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만일 다른 지적재산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을 경우 기업들은 스스로의 연구, 개발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개발, 축적하기 보다는 정당한 댓가의 지불없이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도용하거나 무단사용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타기업의 영업비밀을 도용하거나 무단 사용하는 기업이 스스로의 연구·개발노력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개발·축적한 회사를 축출함으로써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업계의 흐름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예방하고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산업계의 창작활동의 산물인 영업비밀이 완벽하게 보호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새로운 창작활동의 동기를 약화시켜 결국 기술개발이 위축되고 영업비밀 정보의 축적이 저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 등 노하우의 개발에 소요되는 장기적 투자가 수포로 되는 결과를 가져와 관련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이를 이유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를 기피할 우려가 있어 이는 결국 국가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으로 연구개발활동을 장려하고 연구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최근 미국 등 선진공업국들의 기술개발 규제움직임이 구체화(기술개발 규제법화)되면서 공여기술의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흡할 경우 첨단기술의 제공을 기피하게 되어 우리의 선진산업화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됨으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입법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대외적인

에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해 얻은 권한의 범위내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증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5조(소멸시효)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

신뢰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첨단분야의 신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을 보다 촉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네째, '86년의 한·미간 통상관련 지적재산권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은 물론 GATT/UR Tri ps(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상)에서 논의 되고 있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채택이 확실히 되고 있고 우리의 대외투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우리의 영업비밀이 외국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보호 추세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산업스파이 등의 반윤리적, 반문명적인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내지는 처벌을 통해 경쟁의 법칙을 바로 세우고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기술관, 기업관"을 산업계에 정립하기 위해서도 기술정보 등 노하우의 도난을 방지하는 법적 장치를 두어 법과 제도의 엄한 운영을 통해 또는 기업과 직장인의 가치관을 통해 영업비밀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용된 영업비밀에 의하여 생산·판매된 상품이 시장에 유통될 경우 소비자가 진실로 원하는 상품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 선량한 소비자를 속이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품질이 조악할 경우 불의의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식품이나 의약품의 유통은 소비자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기계류나 차량, 선박, 항공기 부품 등에서의 상품은 산업재해를 일으킬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이와 같은 소비형태 왜곡의 예방을 위해서도 영업비밀을 법적으로 적절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현행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적 구제 제도의 미비점을 들 수 있는바, 우리의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민법이든 상법이든간에 영업비밀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다만, 침해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와 고용관계 등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한 때에는 민법의 계약법상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침해자가 영업비밀 보유자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 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성하지 못하는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구제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더욱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권 등을 인정하기란 더 더욱 어려웠던 실정이다.

또한 형법에 있어서도 영업비밀침해행위 그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보 칙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한다.

- 1 (현행과 같음)
- 2 (")
3. 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

직원 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업의 생산방법 기타 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때

①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죄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

자체를 범죄행위로 보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기업의 종업원이 자신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누설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 자신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영업비밀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하는 정도이고 산업스파이 등 제3자가 영업비밀을 탐지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이 고작이다.

4. 외국의 입법 예와 우리의 입법추진

가. 외국의 입법 예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입법의 예를 살펴보면 영미법계국가에서는 19세기초경 Common Law에 의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보호되어 오고 있던 중 미국이 1979년에 모델법인 통일 영업비밀 보호법을 제정하여 현재 32개 주에서 주법으로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고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민법, 불법행위법 등 개별법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개발도상국가인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는 물론 남미의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 동구권 국가인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도 법적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우리의 입법추진 경위

우리나라에서 최근 실질한 영업비밀에 관한 설문조사(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총 응답자의 94%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 법을 시급히 제정, 시행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5%, 1년 내지 2년 내에 제정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6%를 차지함으로써 71%가 2년 이내에 제정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계에서의 이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와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허청에서는 이미 1988년 8월부터 학계, 법조계 등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영업비밀 보호제도 연구반을 설치, 운영하여 이에 대한 연구와 아울러 '89년, '90년에 각각 1차례씩의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산업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1990년 12월부터 영업비밀 보호입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안 6차에 걸친 심의과정을 거쳐 1991년 4월말에 특허청의 법안 초안이 마련되었다. 특허청은 이 초안을 가지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5회에 걸친 설명회 및 토론회 등 가진바 있고 현재 관계부처 의견조화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당정협의, 국무회의심의 등을 거쳐 1991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 시행전에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 또는 사용자가 그 영업비밀을 이 법 시행후 사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